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77

발의연월일: 2021. 2. 8.

발 의 자:전용기·고영인·김승원

도종환 · 서삼석 · 송갑석

유정주 • 이병후 • 이형석

홍정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모계 중심의 출생신고 체제에 따라 미혼부는 아동의 출생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해왔으며, 최근에는 생모가 자신의 사정 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조차 발생 함.

UN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출생신고를 인간의 기본권리로 천명하고 있으며, 출생신고를 통해 각종 법적 보호망에 수용될 수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아동이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입법 상의 허점이라 할 수 있음.

2015년에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허점이 일부 보완되었고, 최근 대법원 판결(2020스575)에 따라 허용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이는 부분적인 구제 및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 간의권리 차등이 해소되지 않았음.

이에 모의 미상 상태 등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 공인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부임을 증명할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 강가정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7조 개정).

법률 제 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부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유전자검사 결과로 친생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	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
한 인지) ① (생 략)	한 인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모의 성명・등록기준지 및	② 부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
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	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
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	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지
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	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유전자
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	검사 결과로 친생부임을 증명
고를 할 수 있다.	하여야 한다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